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도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3. 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 및 송출 지원 등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방송,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상시 운영되는 미디어에 한하여 취약계층 카테고리를 별도 개설하거나 자체 제작 미디어의 50% 이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미디어 제작 및 송출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운영활동비, 교육훈련비, 공간 및 장비 임차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일부 지원
  - ※ 협약 이전 집행 사업비는 불인정
  -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 지원자격 : 당해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여 영상물 제작관련 업종등록 또는 미디어 제작 송출 관련 신고(언론방송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를 필한 단체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제작 및 송출이 가능한 단체
- 지원규모 : 총 80,000천원 (총 3개 단체이내 지원 예정)
  - ※ 적격과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3.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 지원조건

- 과제완료 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지원결정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
- 협약기간(2023년 12월 11일) 내 지원금 정산 및 활동 결과물 제출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수행 결과물 및 홍보자료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로고 노출 및 지원 사실 표기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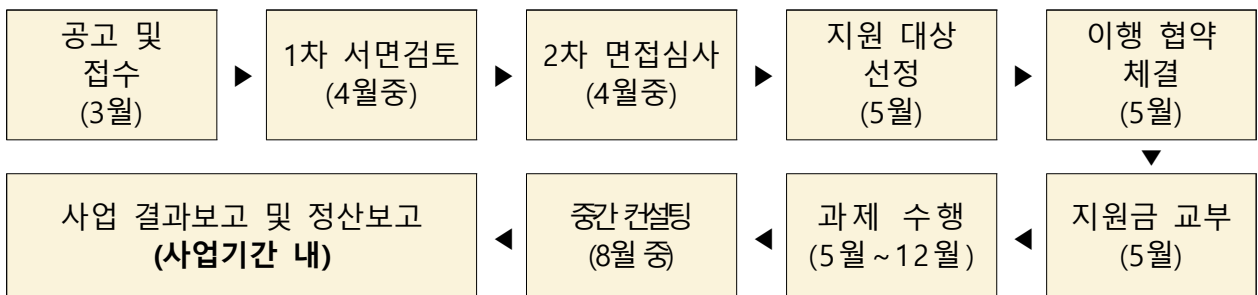
#### ○ 참여제한

##### 제외대상

1.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2.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기관 포함) 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납중인 경우
7.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4. 지원절차



## 5.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별첨2(과제수행 관리기준) 참조

### ○ 보조금 교부 절차 및 방법

- 수행기업은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과의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의 100%)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수행기업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비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 불가)
- 수행기업(자)은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진흥원은 수행기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함

###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수행기업(자)은 협약종료일 이내에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 내역서, 증빙자료, 결과 영상물 등
- ※ 추후 관련 별도 양식 제공 예정

## 6.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3월 31일(금)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3월 31일(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slee@ofjeju.kr)

- 제출서류 및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참조
- ※ 문의 : 영상산업팀 이윤성 ☎ 064)735-0601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1], [붙임 2]
-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미디어 제작 및 송출 또는 영상물 제작 관련 신고/등록/허가 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 심사위원 추천표 [붙임 4]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선정단체 및 사업참여자 실적, 참고자료 등)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서류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작성서식(A4용지 종 방향)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됨
-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불가

## 7.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23년 4월 중 (※ 추후 공지 예정 / 진흥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 : 서면검토(필수서류 중 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2차 : 전문가 5인 이내 구성 면접심사(질의응답)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 단체역량, 예산의 적절성, 운영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각 10점)	배점
사업 타당성 (30점)	• 본 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계성	10점
	• 계획의 창의성 및 기타 사업과의 차별성	10점
	• 실현가능성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획의 적절성	10점
단체역량 (30점)	• 운영인력 및 사업참여자 등의 전문성 보유 정도	10점
	• 취약계층 인식 및 관련 활동 경험 여부	10점
	• 취약계층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10점
예산의 적절성 (20점)	•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10점
	• 집행계획의 현실성 및 투명성	10점
운영의 적정성 (20점)	•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10점
	•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성 여부	10점
추가가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자) ※ 60점 이상 단체에 한하여 추가가점 인정	3점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선정 행사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제시한 제안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8.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단체(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단체(자), 수행단체(자)의 책임으로 봄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단체(자) 부담
- 사업수행 착수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단체(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한 내 사업수행을 중단·포기하거나 사업기간 내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중간 컨설팅(모니터링)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이자포함 금액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